

관리번호 -

(년 귀속)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

1 기본사항										
① 성 명					② 주민등록번호					
③ 주 소										
④ 신고구분		10 정기신고		20 수정신고		30 경정청구		40 기한후신고		⑤ 전화번호
⑥ 종교관련종사자 여부					여 1 / 부 2					
② 환급금 계좌신고			⑦ 은행명			⑧ 계좌번호				
③ 세무 대리인		⑨ 성명			⑩ 전화번호			⑪ 대리구분	⑬ 신고	
		⑫ 관리번호			⑬ 조정번호					
④ 퇴직 소득 명세	⑭ 지급처명		⑮ 입사일		⑯ 지급일		⑰ 퇴직급여		⑱ 비과세 퇴직급여	⑳ 과세대상 퇴직급여
	⑰ 사업자등록번호		⑱ 퇴사일		⑳ 근속월수					
	합 계									

5 근속연수계산	② 제외월수		④ 가산월수		⑤ 중복월수		⑥ 정산근속연수		⑦ 2012.12.31. 이전 근속연수	⑧ 2013.1.1. 이후 근속연수(⑥-⑦)
-----------------	--------	--	--------	--	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6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									
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과세표준 계산	계 산 내 용							퇴직소득세 금 액
		퇴직소득(②)							②
		근속연수공제							③
		환산급여 [(②-③) × 12배/정산근속연수]							④
		환산급여별공제							⑤
	퇴직소득과세표준(④-⑤)							⑥	
	세액계산	계 산 내 용							금 액
		환산산출세액(⑥ × 세율)							⑦
		산출세액(⑥ × 정산근속연수/12배)							⑧
		세액공제							⑨
가산세							⑩		
차감	기납부 세액							⑪	
	납부(환급)할 총세액(⑦-⑨+⑩-⑪)							⑫	
	분납할 세액(2월내)							⑬	
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(⑫-⑬)							⑭		

7 2016-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(※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)										
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과세표준 계산	계 산 내 용							퇴직소득세 금 액	
		퇴직소득(②)							②	
		근속연수공제							③	
		환산급여 [(②-③) × 12배/정산근속연수]							④	
		환산급여별공제							⑤	
	퇴직소득과세표준(④-⑤)							⑥		
	세액계산	계 산 내 용							금 액	
		환산산출세액(⑥ × 세율)							⑦	
		산출세액(⑥ × 정산근속연수/12배)							⑧	
		과세표준안분 (⑥ × 각근속연수/정산근속연수)							⑨	
연평균과세표준(⑨/각근속연수)							⑩			
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과세표준 계산	계 산 내 용							금 액	
		퇴직소득(②)							⑩	
		퇴직소득정률공제							⑪	
		근속연수공제							⑫	
		퇴직소득과세표준(⑩-⑪-⑫)							⑬	
세액계산	계 산 내 용							2012.12.31.이전	2013.1.1.이후	합계
	환산과세표준(⑬ × 5배)							⑭	⑮	⑯
	환산산출세액(⑬ × 세율)							⑰	⑱	⑲
	연평균산출세액 (12.12.31.이전: ⑰ × 세율, 13.1.1.이후: ⑱/5배)							⑳	㉑	㉒
	산출세액(⑬ × 각 근속연수)							㉓	㉔	㉕

작성 방법

- 1. 란은 적지 않습니다.
- 2.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.
- 3. ❶ 기본사항(⑥)란: 퇴직소득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"종교관련종사자"에 해당하며, 「소득세법」 제22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의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"종교관련종사자 여부"란에 '여 1' 을 선택합니다.
- 4. ❷ 환급금 계좌신고(⑦·⑧)란: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
- 5. ❸ 세무대리인(⑨~⑬)란: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6. ❹ 퇴직소득명세(⑭~⑳)란: ⑳ 퇴직급여란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합니다.
 ※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(퇴직소득지급명세서)[별지 제24호서식(2)] 또는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.
- 7. ❺ 근속연수계산(㉓~㉘)란: [근속연수 = (총근속월수 - 중복월수)/12]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. 다만,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,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.
- 8. ❻ 2016~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가. ㉙ 퇴직소득란: ㉚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.
 나. ㉛ 환산급여별공제란: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.

구분 \ 환산급여	8백만원 이하	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	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억원 초과 3억원 이하	3억원 초과
환산급여공제	환산급여의 100%	8백만원+ (8백만원 초과분의 60%)	4천520만원+ (7천만원 초과분의 55%)	6천170만원+ (1억원 초과분의 45%)	1억5천170만원+ (3억원 초과분의 35%)

- 다. ㉜ 환산산출세액란: 퇴직소득과세표준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- 라. ㉝ 과세표준안분란: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. 12. 31.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. 1. 1.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.
- 마. ㉞ 환산과세표준란과 ㉟ 환산산출세액란: 2013. 1. 1.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.
- 바. ㊱ 연평균산출세액란: 2012. 12. 31. 이전 부분은 ㊱ 연평균과세표준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, 2013. 1. 1. 이후 부분은 ㉞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- 사. ㊲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: ㊲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.

구분 \ 퇴직연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퇴직연도별 비율	20%	40%	60%	80%

- 아. ㊳ 세액공제란: 「소득세법」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 - 자. ㊴ 가산세란: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(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).
9.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,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